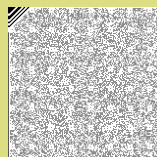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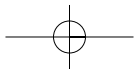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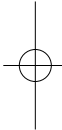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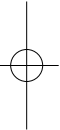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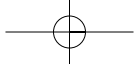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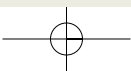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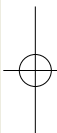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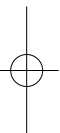
11-1620000-00093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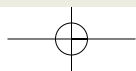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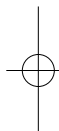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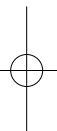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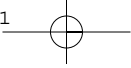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학생인권조례》바로 알기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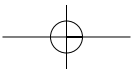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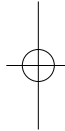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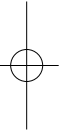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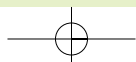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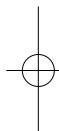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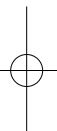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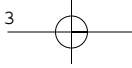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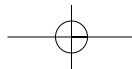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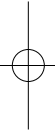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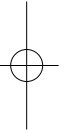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학생인권조례》바로 알기 안내서



목차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안내서 -

학생인권조례 **이해** 하기

- | | |
|--------------------|----|
| 1. 학생인권조례란? | 10 |
| 2.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황은? | 12 |
| 3.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 14 |
| 4. 학생인권조례 전담 기구란? | 15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 | | |
|-------------------------------|----|
| 5.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 20 |
| 6.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 | 22 |
| 7. 학생에게는 학습권만 보장하면 된다? | 23 |
| 8.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 24 |
| 9.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의 관계다? | 26 |



10.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28
11.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29
12.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30
13.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31
14.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	33
15.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35
16.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인 학교생활규정을 간섭한다?	36
17.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38
18.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지된다?	39
19.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학생인권조례만 있다?	40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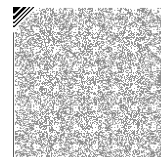
•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71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기본조례보다 조금 늦은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2023년 10월 현재 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참여권 등을 명시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명칭이나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생인권 관련 정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옹호관과 그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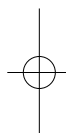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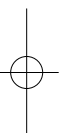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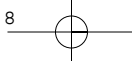
그동안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학생 신분 또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됐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권기본조례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근거가 되듯이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 구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한다거나, 학생인권과 교권을 갈등의 관계로 보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이 안내서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담당자에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Q&A 형식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 한 권의 안내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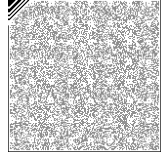
1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학생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에 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의 성격도 갖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 존중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다양한 권리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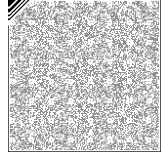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학생인권보장기구의 설치, 학생자치 활성화와 참여기구 설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등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현장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재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는 학생 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시 · 도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학생 안전 조치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 · 징계 사실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 표현 제한 금지, 교내 · 외 정치활동 및 집회 참여 제한 금지 등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교규칙 제 · 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
적법한 징계 절차	- 부당한 상 · 벌점제 제도 운영 제한 - 징계과정에서의 해당 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제 - 상담 및 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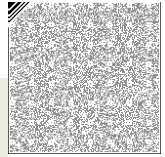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23년 10월 현재 7개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해 시행하였고, 이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추가되지 못하다가 2020년 이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현황

연번	지역	학생인권 관련 조례 명칭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 10. 5.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 10. 28.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1. 26.
4	전라북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 7. 1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023. 4. 28.
5	충청남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 7. 1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 1. 8.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2021. 4. 12.

학생인권조례 전담 기구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 인권교육,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들도 각 교육청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교육청 내 부서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결정구조도 독립제와 합의제가 혼용되는 등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학생인권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의 인권은 이미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의지가 있다면 직제규칙을 통해서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부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근거를 명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지원 기구에서는 통상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실태 조사나 모니터링 실시, 인권 존중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인권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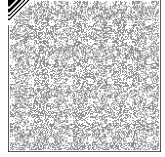
권교육을 지원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수도 운영합니다. 또 원활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강사단을 구성하거나 지역 내의 인권교육 활동가들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인권교육 교재나 교안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 등 구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인권 기구에서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 피해에 대한 회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

■ 교육청별 학생인권 지원 체계(기구) 비교표(2023. 7.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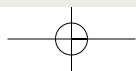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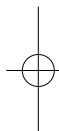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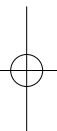
지역	조례	기구 형태	기구의 장	기구 소속	독립 센터	사안 결정	구제 업무 결재권
경기	○	학생인권담당	옹호관(임기제5급)	교육지원청	×	독임	옹호관
광주	○	민주인권교육센터	센터장(장학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합의	과장
서울	○	학생인권교육센터	옹호관(임기제4급)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독임	옹호관
전북	○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임기제4급)	부교육감	○	합의	담당관
충남	○	학생인권센터	옹호관(임기제5급)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옹호관
제주	○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장학관)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과장
인천	○	인권보호관	과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독임	보호관
경남	×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임기제5급)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센터장
울산	×	학생인권지원센터	과장	민주시민교육과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문제 행위의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인권교육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이고, 피해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분이나 형사적 절차를 권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인권 지원 체계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담당 업무
학생인권 상담, 구제, 인권정책, 인권교육, 학생생활규칙, 강사단 운영 등
인권정책,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학생자치, 교류협력, 학생인권 상담, 구제
노동인권교육,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참여단, 인권교육, 학생인권 상담, 구제
인권정책,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학교구성원 인권상담 및 구제, 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 지원
인권정책, 인권교육, 학생인권 구제 지원, 학생인권 상담, 구제,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학생생활규칙, 학생인권 상담, 구제, 학생자치, 인권교육 지원
학생자치, 인권교육 총괄, 학생인권 상담, 구제, 노동인권교육, 토론회, 인권교육, 노동인권 상담, 협력
인권정책,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학생인권 상담, 조사, 교육인권경영 실천과제, 인권 관련 법률 자문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학생인권 상담, 구제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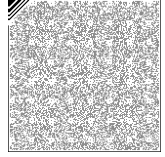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범주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등)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으



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법률체계 내에서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받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이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6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제 2조(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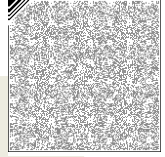
「교육기본법」제2조에서 명시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은 인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여, 1991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정치를 선동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7

학생에게는 학습권만 보장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의 본질적 의미를 잘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권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공부할 권리’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습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부당한)교육을 거부할 권리,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학습자가 자아실현을 위해 배우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유네스코는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 1985년 3월, 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학습권은 학습자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학습권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권리, 학교에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해하고 체득하는 모든 것이 학습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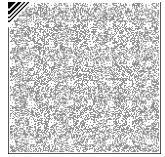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데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방임’과 ‘방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와 함께 뒤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권리는 책임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권리의 행사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항에서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3년 9월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



생은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당연히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의 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 중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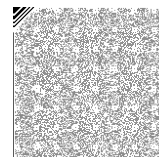
9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종합해보면, 교권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예우와 교원 보수의 우대, 신분보장, 교육활동 보호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처우개선을 수행할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교원 보수의 우대를 수행할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체 상담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학생보다는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2. 5.)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교권침해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생인권조례 지역	0.59건	0.53건	0.61건	0.27건	0.51건
비조례지역	0.61건	0.60건	0.62건	0.29건	0.54건

따라서 교권보호는 학생인권과는 별도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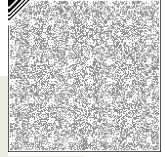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인권조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력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미흡합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4. 25.) 이보다는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정책 및 제도, 과밀학급 등이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문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불균형 등 우리의 교육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가깝습니다. 인권은 사람을 사회적 위치나 상황, 정체성 등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 역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맨 처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있지도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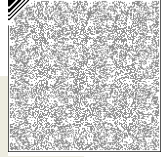
12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문란한 성생활을 허용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은 가장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류에게 매우 고귀한 과정이고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임신과 출산이 함부로 장려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당연히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가진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임신과 출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퇴학 등 교육 기회의 박탈되거나, 혐오 및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교육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규범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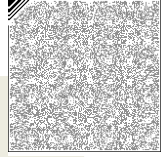
다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 관련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극 보장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종교 또는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 관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4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전자기기와 관련해 소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전자기기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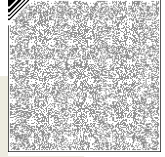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고, 등하교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업 중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통해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수업 시간 중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특히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하게 통신기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신은 기본이고, 학습, 여가, 금융, 문화, 스포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필수품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수거 또는 사용 금지 등 제한과 통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용과 에티켓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할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수업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다른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의 지도활동에 따를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할 권리까지 학생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학생지도권이 교사에게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신설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업방해 행위가 학생인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교사는 당연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23. 2. 23.)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3. 9. 1.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업 방해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경고, 훈계, 훈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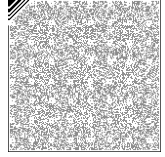
16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인 학교생활규정을 간섭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의 규칙)에서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규정’라고 하고, 이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서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은 우리 헌법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 등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비록 자치법규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인정된 인권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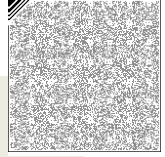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가방이나 호주머니 검사를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빈번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격권 침해, 때로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를 ‘안전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와 절차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로서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 기관이 무분별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 9. 1.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부터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폭력에서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학교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9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학생인권조례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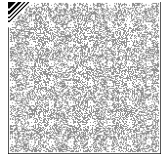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인권문제를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특성상 훈련을 이유로 학습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은 앞으로 대부분 노동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편의지원, 교육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조례는 교육청별로 1개에서 3개까지 입법하는 등 차이는 있지만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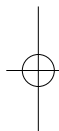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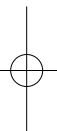
넷째, 학습 선택권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방과후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 학습 강제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습 선택권은 중요한 학생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의 조례를 통해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습 선택권 보장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혼모·부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미혼모·부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개별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4곳이고, 이들 지역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섯째,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3년에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개별조례인 학생인권조례 위에 기본조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보장의 범위를 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으로 확장했습니다.





부록

-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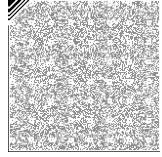
I. 검토배경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서울학생인권조례’라 한다)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2022. 8. 18.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시의회 의장이 2023. 2. 14. 해당 청구를 수리한 뒤 같은 해 3.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시의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또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충남학생인권조례’라 한다)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2022. 8. 22.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되어, 도의회가 청구인 명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

레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23. 3. 9.) 등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지역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라 한다) 또한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6조 및 제31조, 제34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제3조, 제6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위원회의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23. 3. 9.)'과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2019.11. 2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12호(2009), 헌법재판소 2019. 11. 28 자 2017헌마1356 결정 및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이유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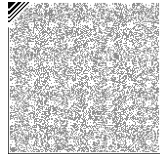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은 폐지 청구의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것, 둘째, 「행정규제법」 위반이라는 것, 셋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넷째, 「교육기본법」과 상충 및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가.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 검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이하 ‘서울조례 폐지’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법률이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고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이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므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0조 등 국민의 권리 규정은 학생에게도 적용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 목록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의 목록을 열거하고, 권리침해 조사·구제, 인권교육 실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교육·체육·문화·예



술의 진흥'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제2항 제5호) 여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공립·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는 제한적 열거주의(외교, 국방, 사법 등)를 취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에서 교육감은 관할구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교육 편성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라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와 이에 따른 인권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주장 검토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 규정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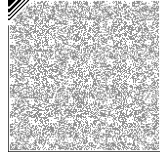
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인바, 헌법이나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한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말하는 '특정한 행정 목적'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9. 4. 23 선고 2018누65790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한 학생인권을 재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일종의 조정자, 또는 학교 자체적 해결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구제를 위한 권한도 시정 권고 외 강제적인 수단이나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등 기본권 침해 주장 검토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이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여,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둘째, 학생의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규정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적 행사 참여 등의 강요,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포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성윤리, 복장, 두발, 신앙 관련 교육을 하거나, 동성에 성향의 자녀와 성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에

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교육권(양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와 제28조, 그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와 제28조는 각기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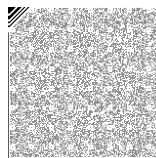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혐오표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2019. 11. 25.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결정에서, 혐오표현은 그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간존엄성 보장과 차별금지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2013) 등 국제인권규범은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차별, 적의나 폭력의 선동과 같은 더 위험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이고,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으며 양자는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4차(2023) 권고 및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2015) 등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 2019. 11. 28 자 2017헌마1356 결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구제조치를 규정한 것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권리구제는 권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것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며, 특히,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하였다.

2)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양심·종교의 자유’ 규정이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0. 3. 30 자 99헌바14 결정 등에서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도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한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에서 ‘종교교육 실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원회 또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해 다룬 진정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왔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양심·종교의 자유’ 규정이 곧바로 종립 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3) 한편,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및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보호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해 성윤리 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자녀와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 부모의 교육권(양육권)이 침해된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별 정체성 혼란은 질병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 치료를 할 권리’ 주장은 이미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의학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 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1992년 세계보건기구는 동성 대상의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 형태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정신의학회(AMHA)의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편람 3판(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R, 1987)’에 이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사인분류 10판(ICD(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10, 2016)’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삭제하였다. 세계정신의학회 또한 2016년 ‘동성애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렇듯 의학계는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질병이 아니기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정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질병으로 보고 ‘전환치료’ 하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상 인권침해 행위로 확립돼 있다. 유엔은 제3차(2017) 및 제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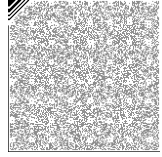
(2023)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와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2015)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전환치료’ 금지를 계속 촉구해 왔다. 이렇듯 동성애 등 특정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질병으로 보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교육기본법」과 상충 및 비교육적이라는 주장 검토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이하 ‘충남조례 폐지’라 한다) 청구인은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이 「교육기본법」과의 상충 등 폐해의 예시로 든 주요 내용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학생의 참여권 보장,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규정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 상의 차별금지나 소수자 보호 규정,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청소년의 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폐해 발생’을 들고 있다. 그런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위원회법 등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조약기구의 권고 및 일반논평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강조되는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한다. 국제인권조약에 차별금지 사유로서 명문상 언급되지 않더라도,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2009)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사유에 포함되고 그러한 차별의 예방과 금지를 국가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2019) 등의 권고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와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는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해의 입법례도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교육 규정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인권교육과 ‘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폐해’ 발생간의 인과성은 불명확하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있다. 위원회는 2017. 6. 8.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동성에 자체는 HIV·AIDS 감염의 원인이 아니고, 성행위 상대가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자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때 HIV·AIDS에 감염될 수 있으며, 단지 감염자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는 것은 감염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HIV·AIDS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2023년 HIV/AIDS 관리지침’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최종견해(2019)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지속되고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불충분함을 우려하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할 것을 권고’ 하였고, 일반논평 제20호(2016)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또는 따돌림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 위원회법, 국제인권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포함되며,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및 인권교육으로 인한 폐해 주장은 사실상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것인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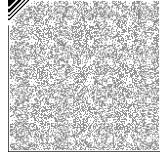
2) 다음으로, ‘미성숙하고 분별력 없는 청소년에게 학칙 제·개정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서울 조례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소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유한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 내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핵심 원칙으로, 협약 제12조에서는 이를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2호(2009)에서 ‘아동의 유의미한 참여와 대의(代議) 공간을 창출할 아동 주도 조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아동을 지원·독려해야 하며, 아동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학교 등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이래, 2021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2022년 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장의 중요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

학생인권조례의 참여권 규정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고 학생의 참여 보장이 학생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상 기반한 ‘미성숙하고 분별력 없는 미성년자’라는 전제와 이에 따라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문제로 보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25조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4조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법령과 학칙 위반의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제

18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징계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목적에 따라 징계절차에서의 학생인권 보호를 규정한 것뿐이므로, 법령과 학칙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다음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상의 학생인권 목록이 ‘부모와 교사에 불순종,담배 등 지도 곤란, 동성섹스나 임신·출산 조장, 교실산만 및 학력저하를 조장하여 비교육적’이라는 충남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부모와 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과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고, 위원회는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제한, 체벌, 인격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양심·표현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제5·6차 최종견해(2019)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법률 및 학교규칙 개정, 아동참여 증진, 학생의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복장 제한 시정,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체벌의 명시적 금지 등을 권고한바, 충남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마. 소결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하여 학생인권 목록 및 그 보장과 관련한 사무를 규정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이미 보장되는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는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나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인식에 기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교사, 부모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으로, 헌법, 학생인권 보장 관련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는 내용의청구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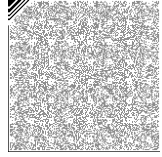
2.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필요성

그동안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학생 신분 또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돼 왔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바, 다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성과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한 학생인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한 학생의 권리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고, 개별 인권침해 사안을 판단하고 권리구제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규범이 되어 신속한 권리구제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기구 설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화·안정화라는 성과가 있다. 즉, 학생인권 정책 등의 심의기구, 학생참여기구,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와 같은 학생인권기구 설치를 제도화 하고, 학생인권 교육이나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학생인권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침해 조사구제 규정을 두고 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

레 제정 이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량에 불과했던 인권교육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중합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인권증진의 청사진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제1차와 2019년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 증가(초·중·고 64.2%→70.7%),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감소(초·중·고 22.7%→6.3%),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증가(초·중·고 67.3%→86.5%), 두발 자유화 및 공론화 등을 통한 개성실현 보장 증가(중·고 56.9%→94.6%)와 같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20년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77.3%, 중학교의 79.7%, 고등학교의 7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의 ‘2021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교의 86.5%, 중·고등학교의 71.5%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실제 학생인권이 증진되고 학교가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었는지를 계량화하여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인권의 문제를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학생인권 보장의 핵심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부응해 왔다. 이러한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 학생인권기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2015~2023. 3. 1. 서울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1,312건) 중에서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것이 187건(14.3%)이고, 학교내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 ‘조사중 종결’로 처리된 경우도 25.7%(337건)에 이르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규칙 개선 컨설팅과 같은 조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인권기구들은 학교 현장에 보다 가까이, 그리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제권한과 그 이행을 위한 학생인권센터의 활동은 ‘현장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와 같이 현장에 밀착한 인권개선 조치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인권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고 자치규범인 ‘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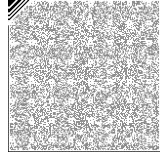
IV.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위원 한수웅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고, 위원 이충상, 위원 김용원, 위원 한석훈은 기권의사를 표명하였다.

V. 위원 한수웅의 보충의견

서울시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라 한다)에 담긴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그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학교의 영역에서 학생인권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진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의견을 밝힌다.



1.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한 별도의 위임없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기본권적 지위의 확정 및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율은 언제나 전국가적 사안으로서 ‘전국가적(全國家的) 민주적 정당성’, 즉 입법자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지 부분적·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련의 조항들은 가령 ‘...할 권리를 가진다.’, ‘...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헌법이나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단지 확인하거나 또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단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수의 조항들은 ‘... 해서는 안 된다.’, ‘...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해야 한다.’ 등 개인에게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형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은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특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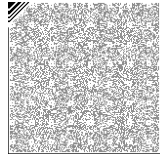
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교육의 영역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실현하고자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의 사립학교의 자유’, 나아가 위 조항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종교적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 조례는 제8조(과도한 경쟁금지, 학생의 휴식권 침해금지, 과도한 선행학습 금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금지), 제10조(학생의 휴식권 침해금지), 제12조(학생의 용모규제 금지), 제13조(소지품의 검사 금지, 휴대폰의 소지 금지 등), 제14조(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강요 금지) 등 학교의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계획을 넘어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제4장)를 규율함으로써,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조사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자료요청권과 질의권, 현장방문조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대응하여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조사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제48조), 조사대상자인 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다수 조항은 교육당사자인 학교와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에서, 위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



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아가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입법자가 ‘개인의 기본권제한’을 조례로써 규율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가지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헌법 제75조의 엄격한 요건은 ‘조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그러나 입법자가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제정은 비록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행정권’에 의한 규범제정이다.

지방자치행정은 행정작용으로서 국가조직 내에서 집행부에 속한다. 지방의회도 ‘권력분립원리의 의미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분립제도 내에서 ‘행정’의 영역에 귀속된다. 지방자치행정에서 강조되는 민주적 요소에 의해서도 ‘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의 법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자가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입법자는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안 및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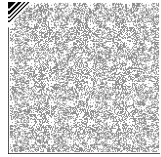
헌법 제75조의 규정이 행정입법권의 위임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이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의 명확성은 행정입법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 위임의 명확성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입법자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인 것을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75조의 요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근거조항으로 언급한 법률조항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임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단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위임하는 조항들이라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위임은 사실상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백지위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법치국가적 결함이다.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권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으나, 개인의 기본권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언제나 개별적 법률에 의한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가 학생인권조례의 근거조항이라고 언급한 법률조항들이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내포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위임한 법률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나아가 설사 이를 위임의 근거조항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의 규율내용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하는 일련의 법률조항들의 '존재'만을 단지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위임법률의 '내용'이 본질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지의 관



점에서 의회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판단의 타당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침해유보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국가공동체의 본질적인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고,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의미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의회유보원칙은 입법자에 대하여 본질적인 사안을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법자가 행정부에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써 의회유보는 입법자와 행정부 간에 규율권한의 경계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가령, 입법자가 학생의 퇴학조치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경우, ‘침해유보원칙’의 관점에서는 위임법률의 존재여부만이 문제될 뿐, 기본권제한이 법률 또는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임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의회유보원칙’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것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퇴학에 관한 규율이 본질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면, 입법자는 이를 스스로 정해야 하고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퇴학조치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이기에 의회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차적으로, ‘본질적’이란 기본권실현에 있어서

의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안이 당사자의 기본권실현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할수록,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며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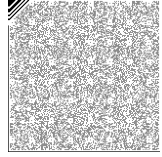
한편,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이라는 내용적 기준은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의회의 입법절차에서 결정될 필요성이 있는지’, ‘공개토론을 통한 이익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의 절차적 관점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기능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조정하여 공익으로 수렴하는 데 있다. 의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다. 의회의 결정절차는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에 보다 적합한 절차이며, 이로써 공익의 발견과 정당한 이익조정을 위하여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다.

이로써 의회유보의 규율대상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내용적 관점)과 ‘입법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절차적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요컨대, 규율대상이 내용적으로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규율대상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하여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

다. 학교교육에는 국가, 학부모, 교사, 학생이라는 일련의 교육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운영자이자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제도를 조직하고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권한(학교교육권한)을 가진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녀교육권’을 가진다. 학생은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 국가

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즉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발현할 권리(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또는 학습권)를 가진다.



교사는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독자적 책임과 자율성의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 기본권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수업권이 기본권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수업권’이란 교사의 교육활동이 국가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율되어서는 안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독자적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교사 직무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국가의 학교교육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교사의 수업권 사이의 관계와 경계설정에 관한 것이다.

라.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학교교육권’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특히 국가와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충돌할 수 있다.

성교육, 윤리교육 등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형성에 관한 개별교육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형성하고자 하는 부모 교육의 전반적 기초에 해당하고 국가는 세계관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속한다.

한편,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헌법의 인간상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써 필연적으로 가치연관적 성격을 가진다. 교육은

학생에게 특정 가치관이나 사회적 생활양식을 전달하고 학생을 기존의 사회질서에 적응시키고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타인에 의한 형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학교교육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충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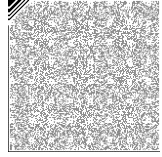
학교교육이 학부모의 가치관·세계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한다.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인격발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가능성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가능하면 인격의 자유롭고 자율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의 인격발현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 견해나 편향적으로 선별된 지식의 전달을 금지하고 모든 중요한 정신적 흐름을 균형 잡힌 개관(概觀)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는 사회의 모든 중요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중립적인 중개자’로서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는 성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방향의 견해를 주입시키려는 시도나 특정한 성적 태도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영역은 공교육의 주체인 국가, 교육담당자로서 학교와 교사, 자녀교육권의 주체인 학부모 및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 등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권한, 기본권, 이익 등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제5조), 교육감과 학교에 대하여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제28조) 규정하는 경우, 국가의 교육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교육을 비롯하여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국가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관·세계관을 가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위 조례조항들은 이와 다른 성교육관을 가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 조례 제16조는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사립학교의 자유는 종교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는 국공립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의 종교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종교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사학설립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강제적 실시를 금지하는 위 조례조항은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정해야 하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나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제19조),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

리(제20조)를 가진다고 하여 ‘학생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지위 및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에 속한다.

한편, 다른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참여권’에 관하여 보건대, 학부모의 참여권은 학교교육에서 국가와 학부모의 관계에 관한 기본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제시권의 형태로, 초·중등교육법은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의 형태로 학부모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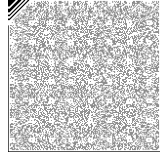
학생의 참여권도 ‘학부모의 참여권’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조직과 운영과 관한 기본결정으로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바.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규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필연적으로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 즉 관련 교육당사자의 기본권과 이익을 함께 규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과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충돌 상황의 조정과 해결은 민주국가에서 입법자의 과제, 즉 입법자가 입법절차에서 공개토론과 이익조정을 통하여 스스로 이행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나아가, 학교의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상이한 권한·기본권·이익 사이의 경계설정과 조정의 문제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적 요소에 의하여 지역공동체에 국한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초지역적·범국가적 문제이다.

성교육에 관한 국가교육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경계를 설정하고, 종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교육의 범위를 정하며, 학교영역에서 학생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교사의 수업권·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등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한다.



3. 결론

헌법재판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하는 일련의 법률조항들의 ‘존재’만을 단지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위임법률의 ‘내용’이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안 및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안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의회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는 일련의 조항들은 교육당사자의 기본권실현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의회의 입법절차에서 공개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익 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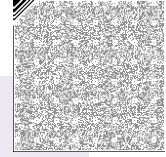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자의 입법 개선 시까지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자가 학교영역에서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 특히 교육당사자의 기본권의 실현에 대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스스로 규율하여 ‘기본 틀’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써 규율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3. 6. 26.

위원장 송두환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위 원 서미화
위 원 석원정
위 원 윤석희
위 원 김수정 <불참>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종민 <불참>
위 원 한수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11.20. / 발효일 1990.9.2. / 대한민국 가입일 1991.11.20. / 적용일 1991.12.20.¹⁾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1)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a)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상기 유보선언 관련,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해 1990년 9월 2일 유보철회(조약 제1913호), 제21조 (a)항에 대해 2017년 8월 11일 유보를 철회함(조약 2361호).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 존엄 · 관용 · 자유 · 평등 ·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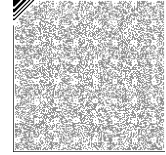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고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

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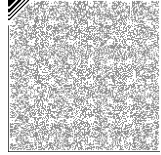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

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에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

서, 공중보건의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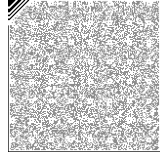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 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 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 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 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 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 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 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 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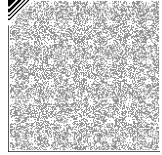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 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능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

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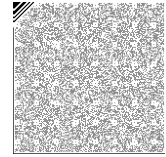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서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 ·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 양국간 ·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

원의 지원을 받는다.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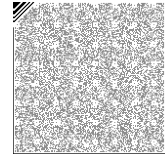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8²⁾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 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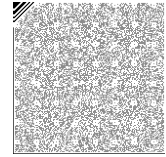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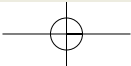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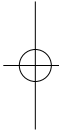
-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안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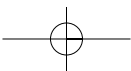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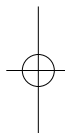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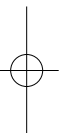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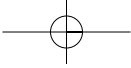
발행일 2023.12, 발행인 송두환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 집필 허창영
제작 젊은기획 02) 2264-2015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전화 02) 2125-9831 팩스 02) 2125-0918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974-7 0337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이 안내서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담당자에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Q&A 형식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 한 권의 안내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